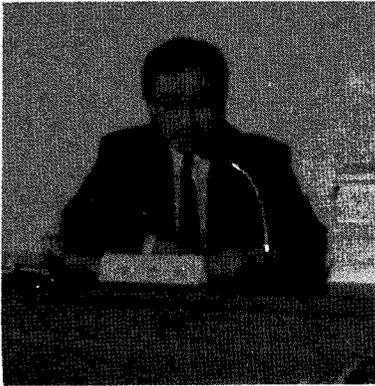


#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 제1차 회의가 한국통신 기술협회 회의실에서 3월26일 개최되어 표준 적합여부 심의기준 및 통신문에 의한 의결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사무국에서 제안한 표준적합여부 심의 기준과 통신문에 의한 의결(안)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심의회 운영요령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키로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가 표준안 제정 12건과 개정 13건에 대한 표준적합여부 심의를 하여 모두 국가표준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의결된 국가표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 정 안

01. 코드없는전화기 표준
02. 키폰 표준
03. 구내교환기 표준
04. 장거리자동전화 발신제어장치 표준
05.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06. 일반전화기 표준
07. 인쇄전신기 표준
08. 팩시밀리 표준
09. 텔리텍스 표준
10. 국선접속용 인터폰장치 표준
11. 가입자보호기 표준
12. 모뎀 표준
13. 신용카드조회기 표준

## 제 정 안

01.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본표준
02.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능표준
03. 메시지처리 시스템 기본표준
04. 메시지처리 시스템 기능표준(10)
05. 공중패킷교환망 접속 기본표준
06. 공중패킷교환망 접속 기능표준
07. 퍼스널컴퓨터 통신절차 표준
08. 2049kbps 신호의 규격
09. 원격검침시스템 통신절차 표준
10. 비디오텍스 단말기 통신절차 표준
11. 전자식 자료교환(EDI) 메시지 표준
12. ISDN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

앞서 기술한 전기통신표준심의회는 전기통신 표준 제정에 대한 시행 세칙 제4조에 의거 전기통신 관련 국가표준의 제·개정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992년 3월2일 체신부에 설치되었으며,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의 운영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 사무국”을 전기통신표준제정에 대한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한국통신기술협회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다.

사무국의 직무는,

- 첫째, 국가표준안 및 이의 신청서 접수
- 둘째, 심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
- 셋째, 확정된 국가표준의 관리 등이다.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는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장인 의장을 비롯하여 체신부, 한국통신, 데이콤,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소)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산·학·연·관이 총 망라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통신 국가표준에 대한 제정에 있어 폭넓고도 깊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에서 올 한해 동안 심의될 국가표준은 총 49건에 이를 예정이며 회의는 3월26일에 개최되었던 것을 포함. 9월, 12월 등 3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명	비고
한국통신	연구개발단장	강민호	의장
체신부	정보통신기술과장	김원식	위원
"	통신진흥과장	박창환	"
한국통신	기술기준국장	이흥구	"
데이콤	시설본부장	김석천	"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백인섭	"
정보통신진흥협회	전무	황인선	"
서울대	교수	최양희	"
연세대	교수	황금찬	"
한양대	교수	박용진	"
KAIST	교수	김재균	"
ETRI	책임연구원	김정남	"
한국통신기술협회	표준국장	이민범	간사

회에 걸쳐 개최될 계획이다.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의 위원 명단과 전기통신 표준 심의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 표준 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참고자료로 게재해 본다.

전기통신표준 제정에 대한 시행세칙  
(전기통신 표준심의회 관계규정)

제 4 조(전기통신표준심의회) ①체신부에 전기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적합여부 및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2. 표준화를 위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기타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기통신분야의 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기중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심의회사무국)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제 8 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표준안의 채택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신청서 접수
- ②심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 ③확정된 표준의 자료관리